

# 공평 고용 기회 위원회 (EEOC)

및

## 사법부 민권과, 이민 관계 비공평 고용 시행의 특별 고문 사무소 (OSC)

### 어디로 호소할까요?

몇몇의 연방법으로 구직자 및 근로자를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. 본 법률은 차별을 조사하는 연방 기관에 의해 시행됩니다.

차별 유형, 회사 크기에 따라 여러 기관이 관여되게 됨으로 차별의 희생양이라고 여기는 경우 어디에 보고를 하여야할지를 선뜻 모르게 됩니다. 본 안내문은 차별의 희생양이라 생각되는 경우 해당 연락 기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### 출생국에 따른 차별

#### 출생국에 따른 고용 차별은 어떠한 형태인가?

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생국이나 혈통(실제의 혹은 추측에 의한), 인종 또한 일부의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구사 시 억양 및 영어 구사 정도에 따라 직원을 차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출생국 차별의 한 예는 영어 억양이 작업의 수행에 장애를 주는가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.

#### 출생국에 의한 차별의 불만의 경우 어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까?

전체 고용원의 수가 15 명 이상의 경우 EEOC 에 보고하도록 합니다. 1-800-669-4000 로 연락하시거나 온라인 [www.eeoc.gov/field](http://www.eeoc.gov/field) 으로 근처 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4 - 14 명의 고용원의 수를 갖춘 경우 OSC 에 보고하도록 합니다. 자신의 권한에 대하여 OSC 긴급 직통전화 1-800-255-7688 로 문의하시거나 사이트 [www.justice.gov/crt/about/osc](http://www.justice.gov/crt/about/osc)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시민권자 신분에 따른 차별

#### 시민권자 신분에 따른 고용 차별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가?

회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혹은 일정 부류의 이민자로서 고용주가 다르게 대우를 할 때 입니다.

시민권자 신분의 차별의 한 예는 회사에서 H1-B 비자 소지자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됩니다.

#### 시민권신분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까?

최소한 4 명 이상의 고용인의 수를 갖춘 경우 OSC 에 보고하도록 합니다. 자신의 권한에 대하여 OSC 긴급 직통전화 1-800-255-7688 로 문의하시거나 사이트 [www.justice.gov/crt/about/osc](http://www.justice.gov/crt/about/osc)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## I-9 혹은 “E-Verify” (전자확인) 문서 남용의 차별

### 문서 남용이란 무엇인가?

회사가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연방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혹은 다른 형태의 문서를 요구하고 유효한 문서를 거부시키거나 직원의 시민권 자격이나 출생을 근거로 하여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문서 남용은 또한 회사에서 전자 확인 를 사용할 때 차별을 가하는 행위가 됩니다.

문서 남용의 한 예는 자신이 운전 면허와 사회보장 카드를 고용시에 제출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또한 영주권(그린 카드)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경우를 말합니다.

### 문서 남용에 의한 차별에 있어 어느 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합니까?

고용주가 **4 명 이상의 고용인** 수를 갖춘 경우 **OSC** 에 보고하도록 합니다. 자신의 권한에 대하여 OSC 긴급 직통전화 **1-800-255-7688** 로 문의하시거나 사이트 [www.justice.gov/crt/about/osc](http://www.justice.gov/crt/about/osc)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

## 기타의 보호차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

연방법에 따라 또한 개인은 **인종, 피부색, 성별, 장애, 종교, 연령(40 세 이상), 유전적 정보(가족 병력 포함)** 에 따른 고용 차별 및 차별에 대한 불평이나 보호 대책을 따르는 처리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 됩니다.

**전체** (자신이 근무한 회사만을 포함하지 않고)고용원의 수가 **15 명 이상의 경우** **1 EEOC** 에 보고하도록 합니다. **1-800-669-4000** 로 연락하시거나 온라인 [www.eeoc.gov/field](http://www.eeoc.gov/field) 으로 근처 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일부의 주의 경우 **인종, 피부색, 성별, 장애, 종교, 연령(40 세 이상 혹은 40 세 미만), 성적 성향, 시민권 소유 여부, 출생국, 가족 상황에** 따른 구직자 및 직원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들 법안은 15 명 미만의 회사에 대한 처벌입니다.

일부 위치에 따라 **311** 로 연락하여 인권 혹은 차별 반대 법안을 시행하는 공평 고용 실행 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에 대한 안내 정보를 온라인 검색으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.

## 시일 제한

고용 차별의 희생양이라고 여기시는 경우 불평을 하실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즉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. **일부 법률의 경우 180 일 이내로 보고를 할 것을 요하고** 시한을 넘기실 경우 자신에 대한 권한을 잃고 말게 됩니다.

자신의 고용의 권한에 대한 문의 사항은 **OSC** 긴급 직통 전화 **1-800-255-7688(동부시각 오전 9 시 - 오후 5 시, 월 - 금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익명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며 **도움이 바로 제공되게** 됩니다. 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
**EEOC (1-800-669-4000 (동부시각 오전 7 시 - 오후 8 시, 월 - 금))** 에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. 통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

어느 해당 기관에 전화해야 할 지 분명치 않으실 경우 위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하여 드립니다.

<sup>1</sup> 연령 차별의 경우 회사 정원수가 20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